

예술인 권리와 지위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일시 | 2021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좌 장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토 론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발 제

장도국 배우

임인자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대책위 간사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주 최

 **광주광역시의회**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광주시민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주광역시의회](#)

 [YOUTUBE](#) 

예술인 권리와 지위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일시 | 2021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좌 장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발 제

장도국 배우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주 최

 **광주광역시의회**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토 론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임인자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대책위 간사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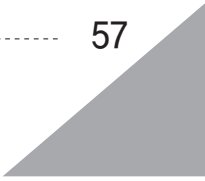
- ◆ 일시 : '21. 7. 8.(목) 14:00
-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5층)
-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내빈 소개 	
14:05~14: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 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14:10~14:5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 장도국 (배우) -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14:50~15:5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론 -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 임인자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 대책위 간사) -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15:50~16: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및 응답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회 	



목차 Contents

인사말씀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07
주제발표	장도국 (배우)	09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17
토론문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25
	임인자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대책위원회 간사)	31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43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57



코로나19로 예향 광주의 문화예술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계(他界)해 보고 지역문화예술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제100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블랙홀이 되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 기여하던 문화예술 분야가 직격탄을 맞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보호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문화생태계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보고자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나윤 교육문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실 ‘**장도국 배우님,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토론에 함께 해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의 척도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으로 판가름하기 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수준 즉 정신적인 ‘문화예술 역사의 혼(魂)’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은 K-방역의 성공과 투명성과 개방성, 창의성이 더해져 전 세계적으로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양의 개인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전 국민들의 잠재되어 있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예향(藝鄕)·미향(味鄕)·의향(義鄕)의 고장이기에 문화예술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욱 이 분야의 비중을 두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당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드-코로나(With-Covid)이후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창작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떠나는 일도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0만 광주시민의 충실한 대변자인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제2·제3의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예향의 도시 광주’라는 명성에 걸맞게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아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모여져 ‘서로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 용 집

안전하고 공정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제도의 필요성

장도국 배우

안전하고 공정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제도의 필요성

장도국 (배우)

1. 광주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광주시립극단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예술기관으로 1991년 개관하였고 올해는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25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리모델링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관에는 총 8개 예술 단체가 있으며 소속된 300여 명의 전문 상임/비상임 단원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광주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총 단장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이 8개 예술단의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예술단체 중 광주시립오페라단과 광주시립극단만이 유일하게 상근 단원 없이 매 작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배우들과 작품을 올리는 ‘작품별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품별 단원제’는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작품 장르에 따라 적합한 배우들을 선발하여 작품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 연극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임, 비상임 단원과 달리 ‘노동자성’ 조차 인정이 되지 않기에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자 극단의 상근 단원인 연출자와 무대감독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어 건강하지 못한 위계 구조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고용형태의 빈틈이 만들어 낸 문제이기도 하지만 ‘작품별 단원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광주시립극단 운영진과 관리, 감독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공연지원과 그리고, 광주시립극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늘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존재하는 운영위원회의 책임 역시 지난 1년간의 회의록만 검토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시청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 분들 역시 예술단과 회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각 예술단의 운영과 작품활동을 총괄하는 운영실장과 예술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립극단 외의 다른 예술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2. 광주시립극단의 2020년 여름 수시공연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그리고 배우, 조연출, 현장 스태프

광주시립극단의 작품 전우치는 화려한 액션과 다양한 특수효과가 결합된 판타지 액션 활극으로 2013년 <전우치전>을 시작으로 14년 <전우치 흥련의 전설>, 15년 <판도라의 서>, 16년 <뮤지컬 전우치>, 그리고 2020년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까지 시립극단의 대표 야외공연 중 하나입니다.

액션과 특수효과, 군무로 이루어진 극이기에 연습과 훈련 과정에서 신체 사용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한 환경, 안전관리자, 적절한 상해/산재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어야 할 공연이었습니다. 작년 전우치의 연습 과정과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배우들의 크고 작은 부상 상황이 2020년에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020년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는 13명의 배우, 30여 명의 제작진이 참여했습니다. 작품 제작, 오디션, 연습, 공연 당시 극단 운영과 작품 진행을 총괄하는 ‘예술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무를 위임받은 연출자 김지훈님, 운영실장 백홍승님, 무대감독 김상오님이 시립극단을 이끌어 갔습니다.

3. 사건의 발생, 피해 내용

사건은 2020년 6월 17일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의 오디션 이후, 6월 19일 합격자를 공고하고 연습에 들어간 6월 22일부터 연습과 공연이 진행되는 사이에 발생했으며 극단 운영실장의 불법사찰은 작품 계약이 끝난 시점인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작품에 참여한 배우, 조연출, 스태프가 겪은 피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지연 작성

현행 ‘예술인 복지법’ 상에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고,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항목들이 누락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서면 계약 체결 의무화’가 작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전우치 연습이 시작된 6월 22일부터 조연출과 배우들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극단 운영의 바쁨과 코로나19 상황, 공연지원과의 제작 기획안의 선 승인, 후 계약 관행을 이유로 연습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7월 14일, 15일이 되어서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2) 불공정 계약 종용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극단 연출자는 조연출에게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던 음향 오퍼레이터 업무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을 거절하자 인격 모독과 계약에 관한 비밀사항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오픈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 연출자는 작품 연습 과정에서 특정 배우에게 역량 부족을 근거로 연출자의 적정 지시 범위를 넘어서는 인격 모독과 공개적인 연습 공간에서 해당 배우가 상처를 입을 만큼의 지속적인 무시를 하였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연습실 및 무대 안전을 책임져야 할 무대감독이 연습 도중 무대 바닥 매트에 발가락이 끼어 골절 부상을 입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배우에게 부상의 책임이 살을 더 빼지 않은 배우에게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배우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수술 이후의 상태나 재활에 대한 물음이 아닌 몸매 비평을 하여 해당 배우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가해를 했습니다. ‘성희롱’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고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배우는 ‘직장 내 성희롱’에 기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느꼈을 고립감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5) 안전사고 발생

계약서도 상해/산재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 연습을 하던 배우가 무대 매트에 발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월30일에 사고가 발생할 당시 계약도, 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수술비를 배우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6) 부당한 업무지시

공연에 필요한 무술을 연습하던 중에 입은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작품에서의 역할이 축소된 배우에게 연출자와 마술 감독은 공연을 하루 앞두고 무대에서 사용되는 마술 장치의 제조, 설치, 실행을 맡겼습니다. 해당 마술 장치는 장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했지만 단 한 번도 해당 장치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배우에게 업무를 맡김으로써 부상당한 배우를 다시 한번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4. 문제제기 과정과 가해자 징계

문제 제기를 결정한 다른 세 명의 동료들과 순서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결정하고 2020년 8월 중순 피해 내용을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에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이곳이 공공예술기관이 맞나 싶을 만큼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 부재하였고, 책임자들의 무책임과 회유, 그리고 2차 가해를 경험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실과 광주광역시의회의 문도 두드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 공론화를 결정하고 문제를 알렸습니다. 지역 내 동료 예술인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셨고 작년 9월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대책위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전제되지 않는 '노동자성'인정의 문제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과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만난 자문 변호사님 모두 '노동자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 제도(근로기준법)를 근거로 문화예술회관과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거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 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 공공예술기관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광주시의 적절한 사과를 받을 목표는 다음 문제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말해줄 수 있거나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주체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노동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와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를 입증할 준비를 밤을 새며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얼마나 많은 잠과 끼니 개인의 사적인 모든 시간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대책위에 참여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덕분에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강은미, 윤미향)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시립극단 작품참여 예술인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노동인권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정 판단 등이 더해져 작년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시립극단 <전우치> 작품 참여 배우 및 조연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범위반을 확인하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공연예술인에 대한 고용관계 및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들은 각각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징계를 하겠다던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의 약속과는 다른 너무도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이 문제는 종결이 됩니다.

5. 사건의 종결

형식적인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경징계를 통한 종결은 예술회관과 행정이 말하는 종결일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종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고용형태는 1년이 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극단을 이끌어내갈 예술감독 역시 15개월째 부재한 상황에서 극단 운영 개선의 주체가 모두 세 명의 가해자입니다. 피해, 문제 제기, 해결 과정, 결과가 남긴 아픔과 과제에 대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만약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그 피해자들은 저희가 겪은 그 고통의 시간을 똑같이 겪어야만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행정적 종결 처분과 가해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마주할 것입니다. 내용의 개선과 제도의 보호가 없다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떠한 일 들을 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6. 남겨진 과제

- 1) ‘작품별 단원제’를 표방하며 운영해온 기형적인 고용형태를 개선이 시급합니다. 철저히 규정된 권리와 지위를 갖지 않는 사실상의 유령 단원인 ‘작품별 단원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례에도 단원의 지위는 상임과 비상임 단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 2) 공공예술기관인 문화예술회관은 ‘예술인 복지법’ 상의 ‘표준계약서’ 필수 명시사항들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3) 작품의 연습이 시작되기 전 서면계약서작성과 적절한 상해, 산재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진과 작품 참여하는 배우, 스태프들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과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5) 광주문화예술회관 사무국과 8개 예술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립극단 문제만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6)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합니다.

지역 프리랜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그 대안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지역 프리랜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그 대안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1. 들어가며

한 개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 한 개를 올리기 위해, 작품 뒤에서 보이지 않은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발생한 부조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광주청년유니온이 함께 연대하며 프리랜서청년예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함께 목소리 내왔다.

예술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립극단 채택한 ‘작품별 단원제’ 라는 제도는 상임연출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 무대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놓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계관계가 설정 되었다. 이들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상을 감수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정부가 예술인들을 검열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비엔날레의 직장갑질, 아시아문화전당 등의 공공기관의 작품검열, 문화예술계 미투 등 의 사례들은 문화예술계가 고질적으로 겪어 온 문제들과 예술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비단 광주시립극단 뿐 아니라 아직도 여러 예술의 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상급자·클라이언트에 의한 갑질, 4대보험 미가입은 여전히 당연한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2014년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견습생에게 월급 10만원, 인턴 월급 30만원을 지불했던 이상봉 디자이너를 ‘청년착취대상’으로 선정했었다. 당시 패션노조 지회장 배트맨D(가명)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환경이 이상봉 디자이너 뿐 아니라 패션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상황’ 이라며 토로했다.

예술은 노동이 아니라고 통용되므로 써 일어나는 문화예술계 노동인권 침해, 언제부터 밥 먹으며 예술하는 것이 어려워 졌을까?

2. 광주시의 문화정책과 청년프리랜서 지원조례

광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자칭한다. 그러나 예향의 도시,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광주의 문화예술정책은 주로 ‘창작활동 비용을 지원’ 하는데 에 집중되어있다. 예로 대표적 문화예술 조례인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살펴봐도 제 2조 보조금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부분 예술제, 문화제, 경연대회 등의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와 공모대회 개최가 12개의 사업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또한 청소년, 실버 및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등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다. 문화기획자 육성 및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이 있으나 이 또한 기존의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이다.

시의 문화정책이 주로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부재하며 예산의 규모 또한 작은 편이다.

예술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대의 작은 예산규모도 문제다.

일례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 연극 작품 한편 당 1300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지원하지만 연극 한편당 최소 두세 달의 연습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스태프들의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 거기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무대연출, 소품비, 분장비 등을 계산했을 때 1300만원이란 돈은 절대 크지 않고 대부분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간절한 예술인들은 창작지원사업을 공모하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 창작활동과 더하여 예술인 개인의 삶을 지탱하며 자생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그들의 노동형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로지 예술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예술인 57.4% 중 76%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응답자 72.7%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다. 예술 활동 시 계약 체결 경험자는 전체 42.1%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또한 각각 24.1% 와 27.7% 로 나타났다. 전업 예술인 10명중 8명은 프리랜서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을 하는 노동의 형태이다. 예술인은 곧 프리랜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실태 또한 긍정적이진 않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 가운데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66.4%로 가장 높았다. 노동형태 및 조건 가운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내용의 가장 높은 비율은 부당한 수익배분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부당대우 경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긴다’ 75%로 높게 나타났다. 더하여 프리랜서 전 직종 분야 중 2020년 전체수입이 가장 낮은 분야는 문화예술이었고 이 중 여성 문화예술인은 남성에 비해 연 평균 약 400만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예술인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월 10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며 일터의 부당대우에 취약하다.

광주광역시청년프리랜서 지원조례가 2020년 9월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프리랜서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정도로 명시되어 있기에 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점이다.

적어도 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예술기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채용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시립극단 부조리사태에서 보이듯 공공예술기관에서 만큼은 ‘작품별 단원제’와 같은 시가앞장서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생산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을 집행하는 유관기관들이 현장 예술인들의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프리랜서 예술인노동상담, 인권침해 제보센터 등의 사업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배제되며 권리침해에도 마땅히 이들을 보호 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 최저임금 위반, 폭언과 갑질에도 당장 밥줄이 걸린 문제이기에 쉽게 저항 할 수 없으며 과정에서 상급자와 클라이언트와 문화예술인 사이에는 견고한 계급적 위계가 생긴다.

비단 고용불안정 뿐 아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와 함께 수행한 노동자 실태조사(2019년 10월~2020년 1월)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1%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경험했으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비전형 노동의 특성상 소득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관련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 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비전형, 경계성 노동의 형태는 증가 할 것이다.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3.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예술인은 노동자인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한다. 2009년 10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문화·예술 산업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 보고서를 보면 ‘프리랜서’ 나 ‘임시, 일용직’ 일수록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예술인들의 불안정성, 부당대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사이 이제 예술인들 스스로가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바꾸기 어려웠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인디/언더그라운드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음원과 공연의 정당한 수입배분을 요구한 ‘뮤지션유니온’의 창립, 같은 해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등장. 2015년 다양한 영역의 예술인들이 세운 ‘예술인소셜 유니온’, 2017년 방송작가유니온, 2018년 희망연대 산하 방송스태프지부, 2019년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창작자들의 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의 탄생.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든 힘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술인들에게 창의성과 예술성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기본권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자 예술인의 직업적권리를 명시하며 권리침해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제시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 2019년 20대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으로 나뉜다.

특히 법안이 규정하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예술인으로부터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과 ‘예술 활동을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창작물의 발표 또는 실연 활동의 기회를 찾는 사람’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서 정의되어 있다.

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예술인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취약하다.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들을 법적 보호망 아래 포섭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현재 2019년 4월에 발의 된 원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두고 문화체육위원회와 예술계 사이의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안에서 보장하는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대상 범위, 배상에 대한 조항 등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첫 발의 된 20대 국회에서 파기되었고 다시 2020년 6월 21대 국회 문화예술계 1호법 안으로 재발의 되었으나 여전히 1년이 지난 지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단순히 개별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하향식 복지개념의 수혜자로만 예술가들을 위치시킨다면 현장 예술인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에 21대 국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원안대로 제정되어 지역에서도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4. 마치며

6월 29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1일~6월27일까지) 공연계 매출은 1157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 매출 969억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같은 해 하반기 매출 842억 원과 비교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공연매출 1157억 중 903억 원은 1000석 이상 대극장 뮤지컬이 75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2021년 ‘시카고’, ‘위키드’, ‘맨오브라만차’ 등 검증된 대작들로 흥행이 쏠리면서 여전히 소규모, 기초예술분야들은 코로나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 왓챠 등 거대 문화예술기업의 등장으로 기초예술이 약화되고 이미 거대자본이 유리했던 판에 위기가 닥치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현장의 창작자들이다. 거대자본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좋은 환경이 코로나가 가져온 큰 위기 중 하나다. 더하여 IMF와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선 우선적으로 소비를 줄이기 좋은 영역은 문화예술계이다. 언제 일을 못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회적 재난들은 예술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역사 속에서 예술은 자주 기득권과 자본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그렇기에 예술은 저항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었다. 예술이 자본과 기득권의 대척점으로서 권력의 구조를 타파하고 극복해왔다면 예술가들이 처한 문제에 사회와 제도권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가 필요한 이유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가 필요한 이유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정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천부적 인권에 준하며 예술의 존립근거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천부적 인권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예술계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문화국가 및 사회국가의 원리 침해한 국가 폭력이다.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정책범죄이다.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행정절차 및 행정법 관련 불법·부당 행위를 일상화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현 정권의 국정 과제 1호는 ‘블랙리스트적폐 청산’이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위시한 문화예술 기관의 제도 개선과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폐기되었다.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김영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나 예술계 위계 성폭력, 불공 갑질 등 권리침해가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예술인의 피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해결 조치를 위한 예술인의 기본법이다. 현존하는 예술 관련 법령은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법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성평등한 환경 조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법률로 규율한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인 예술계 문화와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했다. 이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총 6개 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법제가 필요한 이유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이후에도 예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사회적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와 국가 주도 정책 전달 체계의 폐해, 불평등한 권력, 예술지원 시스템에 귀착된 예술계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인은 또다시 고통 받고 있다. 가령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감염 관리 명목 조치는 예술가를 감염정책에 협력하는 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공중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닐까? 예술 영역의 특수성은 배제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방적으로 예술창작 또는 창작을 전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과 다르지 않다.

공공 기관은 여전히 예술 검열을 지속하고 있다. 형식이 달라졌을 뿐 내용 면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다르지 않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음’을 사유로 들어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 속 문구를 삭제하거나 작품을 가리고, 전시 계약을 파기하고 행사 자체를 취소시키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아시아문화원에서 전시홍보물을 제작하며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의 특정 문구를 삭제한 사건(2021), 이미 성매매집결지 주제로 한 작품으로 전시에 참여하기로 한 작가에게 작품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시참여 취소 통보를 한 광주시립미술관(2019), 2014년 당시 시장에 광주비엔날레에서 세월오월 작품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술 검열, 지속되고 있는 블랙리스트다.

예술원에서 도약을 꿈꾸는 예술인들에게 가해지는 위계 폭력을 우리는 자주 목도한다. <89년 김현진> 사건, <전북 문화예술계 A교수 성폭력 사건>이 그렇다. 성폭력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혹은 무혐의 법적 처분을 받고 현장으로 속속들이 복귀하여 보란 듯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 일종의 백래시처럼 ‘미투’가 정치적으로 변질했다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작품을 발표하는 이도 있다.

요즘은 예술가가 공공 주도의 각종 도시 프로젝트와 일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일반화 되었다. 예술가들이 직접 고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공공 지원 사업을 받거나 용역계약 형태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간다. 따라서 예술활동 방해 노동권 침해, 갑질, 성폭력, 저작권 분쟁 등 불공정 침해가 매우 빈번하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국가에서는 ‘예술인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개선은 거의 없다. 시즌별 단원제로 운영하는 광주시립극단에서 부당해고, 갑질,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시립극단과 가해자가 책임을 방관하고 심지어 2차 가해까지 벌였던 이유를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과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이러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 조사하고, 징계처리 처벌할 법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이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는 예술노동자’ 라고 법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광주시립극단부조리대책위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에서 예술인 권리보장과 지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있지만 광주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 광주의 시민이자 예술인으로 정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검열, 갑질, 위계 폭력, 불공정 관행으로 겪은 고통을 멈추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도가 신설되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회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몇 개의 사례 모두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예술가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광주시 의회가 광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삶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연 민주주의, 인권도시인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예술인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별일 아닐까? 예술계 동료이며,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운동, 예술생태계의 문제, 예술인 지원정책, 법제도 정책 혁신 영역에서 활동해온 필자의 입장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는 꽤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를 방치했을 때 결국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증폭된다. 국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미루고 법 제도 개혁, 문화행정 관료주의 폐해 문제를 방치했다. 결국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중첩되고 심화한다. 최근 가장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가 공론화 된 곳이 광주다. 이렇게 지역적 차원에서 예술인 권리와 지위에 관한 보장방안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견인해온 ‘광주’라서 가능한 일 아닐까 기대해본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제도화의 출발 : 조례 제/개정 및 민관 TF구성

임인자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 간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제도화의 출발

: 조례 제/개정 및 민관 TF구성

임인자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 간사)

1.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조항이 삭제된 예술인 복지법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1항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예술인은 유령에 불과했다. 헌법에서 명시한 예술인의 권리는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다가 2011년 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 이후, “법률로써”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책상 속에 잠들어 있던 <예술인 복지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1년 故 최고은 작가는 집주인에게 건넨 쪽지에서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고, 사망이후 발견된 이 쪽지는 마지막 유서가 되었다.

1980년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권고>를 비롯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많은 유럽 지역의 연구 문헌들(Neil, 2015; Kral, 2013; L&R Sozialforschung, 2008; ERICarts, 2006)은 공통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크게 두 가지-예술인 노동 특수성, 예술인 활동의 사회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¹ <예술인 복지법> 역시, 제정 및 시행은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실질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사실이다.²

그러나, 하지만 초기 발의 법안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擬制)가 빠진 채 제정된 이후로 <예술인복지법>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발의된 네 개의

1 안채린(2018), 「‘예술인 근로자 의제’에 대한 재 고찰- ‘예술인복지법’ 국회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제45집, 40쪽, 한국예술경영학회, 2018년 2월

2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노동리뷰』, 2012년 7월:5-20

예술인 복지법안 중 세 개의 법안은 모두 예술인들의 노동 환경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틀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 정책 선도가들이 입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조항과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로 제정되기에 이른다.³

예술가의 노동자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예술과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만을 기반으로 한 초기의 예술인 복지법은 노동자로서의 의제가 삭제된 이후 예술인을 노동자로 의제해야한다는 논의는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이후 예술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예술인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포섭하는 대신 예술인 집단을 고용형태에 따라 다른 범주로 나누어 각자 다른 방식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에 집중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모든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예술인 집단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노동 특수성에 논의는 설 곳을 잃었다.⁴ 즉 예술가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게 된 것이다.

2. 프리랜서를 양산하는 문화예술지원의 문제점

그동안 예술은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술이 공적 지원의 근거가 되었던 것은 보몰(William.J.Baumol)과 보웬(William.G.Bowen)의 비용질병(Cost Disease) 이론에서 기초한 것인데, 1966년 발간한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에서 공연자의 작업이란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며 공연자의 육체적 공연, 즉 노동이 바로 산출물이기 때문에 시간당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계속 생산이 이루어져도 그 생산단가가 줄어들 수 없어 비용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적 예술 지원의 근거로 설명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이는 예술인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위원회 혹은 문화재단의 형식으로 설립되어 예술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술가의 노동 시간, 작업 환경 등을 고

3 안채린, 위의 논문, 40-41쪽

4 안채린, 위의 논문, 40-41쪽

려한 지원 체계는 전무하고, 현재의 예술지원 사업은 프리랜서 기반의 활동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술인들의 지위는 현재까지도 계속 취약한 상태로 놓이게 된 것이다.

물론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그 시행령을 통해 예술가 스스로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6월부터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0년 12월 부터는 1달 이상, 50만원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경제적 취약성과 예술인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하는 프리랜서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3.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일명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의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경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의 지시와 시행을 근거했을 때 아무런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러한 국가의 검열과 폭력 앞에서도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인을 둘러싼 지위와 권리의 부재는 곧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장에 대한 법률> 논의로 이어졌고, 블랙리스트 사건 및 미투 사건 이후 예술인들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법률'이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계류중인 상황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의 문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술인을 위한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헌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는 잘 보장되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2020년 발생한 광주시립극단에서의 계약서 미작성, 연습도중 안전사고, 성희롱, 불공정계약 중용, 직장내 갑질, 무허가화약장치조작 지시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립극단에서 '작품별 단원제'로 인해 아무런 권리도 부여받지 못한 배우, 조연출, 스태프 등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했고, 불합리한 체계의 단원 양형 기준은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로 마무리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사과 없이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으로 갈음되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즉시 광주인권옴브즈맨에 사건 조사를 신청하였는데, 광주인권옴브즈맨은 결국 성희롱에 대해서는 성차별이라 결론을 내었고, 연습도중 일어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는 등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결국 문제를 제기했던 배우들은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에서 예술인들에게 이러한 안전사고, 성희롱,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할까? 2019년에 발생한 모 단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당사자는 광주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교통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광주에 방문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결국 예술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1)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통해 확인한 광주광역시에서의 예술인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광주광역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⁵(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조에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는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https://www.open.go.kr/>)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도 광주광역시의 예술인복지지원계획도 그리고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살펴 볼 수 없었다. 2021년 3월 말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총 225개의 각종 위원회에서 394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 예

5 예술인복지지원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열리지도 못했다.⁶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최소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2) 광주시립극단에서의 '작품별 단원제' 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2012년 4월 6일, 광주광역시립극단이 24년 만에 재창단 되었다. 전국 최초의 관립극단으로 1982년 창단됐던 (구)광주시립극단은 6년 만에 해체되는 상처를 딛고 2012년 광주광역시립극단으로⁷ 재창단 된 것이다. 그러나 재창단과 함께 광주시립극단은 5-6명의 정단원 이외에는 아무도 정원으로 두고 있지 않다. 광주시립극단은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정원 역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명시된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 및 정원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작품별 단원>은 이 상임과 비상임 모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중 단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5조(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예능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3.1>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중 제5조

광주시립극단의 정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위표는 다음과 같고, 그 정원을 통해 <작품별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령에 다름 아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에 따른 정원표이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립극단의 정원은 단 6명으로 '작품별 단원'은 그 어떤 지위도 가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임인자,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함께 “준중” 하고 함께 “지속” 하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살고 싶다>,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문 (2021년 6월 24일)

7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중 <광주시립극단 소개> <https://gjart.gwangju.go.kr/ko/cmd.do?opencode=p05071>

[별표 1] <개정 2012.3.15., 2014.2.1., 2017.3.1>

단원의 종류와 정원

(단위 : 명)

교향악단			창극단			발레단		
종 류		정원	종 류		정원	종 류		정원
합 계		113	합 계		71	합 계		70
예능단원	소 계	106	예능단원	소 계	66	예능단원	소 계	66
	지휘자	1		예술감독	1		예술감독	1
	부지휘자	1		예술부감독	1		훈련지도자	1
	악 장	2		지도위원	1		트레이너	2
	부 악 장	1		수석단원	8		수석단원	10
	수석단원	16		차석단원	10		차석단원	10
	차석단원	20		일반단원	45		반 주 자	1
	일반단원	65					일반단원	41
사무단원	소 계	7	사무단원	소 계	5	사무단원	소 계	4
	운영실장	1		운영실장	1		운영실장	1
	기획담당	31		기획담당	2		기획담당	1
	악보담당	2		의상·소품담당	1		무대감독	1
	악기담당	1		무대감독	1		의상·소품담당	1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종 류		정원	종 류		정원	종 류		정원
합 계		81	합 계		81	합 계		81
예능단원	소 계	76	예능단원	소 계	77	예능단원	소 계	78
	지휘자	1		지휘자	1		지휘자	1
	부지휘자	1		부지휘자	1		반 주 자	2
	악 장	1		지도위원	1		안 무 자	1
	부 악 장	1		수석단원	10		가창지도	1
	수석단원	10		차석단원	10		협력단원	73
	차석단원	10		반 주 자	2			
	일반단원	52		일반단원	52			
사무단원	소 계	5	사무단원	소 계	4	사무단원	소 계	3
	운영실장	1		운영실장	1		운영실장	1
	기획담당	2		기획담당	2		기획담당	1
	악보담당	1		악보담당	1		악보담당	1
	악기담당	1						
극 단			오페라단			통합사무국		
종 류		정원	종 류		정원	소 계		
합 계		6	합 계		5	소 계		8
예능단원	소 계	1	예능단원	소 계	1	기획담당		2
	예술감독	1		예술감독	1	홍보담당		6
사무단원	소 계	5	사무단원	소 계	4			
	운영실장	1		운영실장	1			
	기획담당	2		무대감독	1			
	연 출	1		연 출	1			
	무대감독	1		기획담당	1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중 별표 1

(3)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에서 계획 중인 실태조사에 대하여

앞서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예술인 실태조사의 방향은 노동자로서의 위치와 실태에 대한 꼼꼼한 조사보다는 개괄적인 형태로 실시가 되고 있어, 각 분야별 노동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광주광역시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노동 특수성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지원제도는 예술인의 노동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재하다고 생각한다.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의 토론회에서 알게 되었다. 수입과 예술 발표 현황 등의 형태에 머물지 않고 노동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프리랜서의 양산이 아닌 예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 시간과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원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생태계를 고려한 개선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

(4) 타시도의 사례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확산에 관한 조례안〉(2021년 6월)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경기도 의회 정운경 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예술가들이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기존의 성인지 조례가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미투 발생 등 문제제기가 많아 특별히 이 영역에서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 실행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업 및 성범죄 예방 사업 등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이행을 조사·분석하는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정운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문화정책포럼의 회장을 맡아 ‘경기도 문화예술분야 성인지 정책수립과 이행 분석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진영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 조례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건강한 성인지 문화 확산 등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⁸

8 경기도북부탐뉴스 〈정운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 2021년 6월 17일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구청이 예술인과 공연 계약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출연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 권익을 높이는 것으로, 기초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건 대구, 경북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았고 쓰더라도 허술해서 조례에 표준출연계약서를 명시한 건 문화·예술계에서 그야말로 큰 이슈였다. 특히 이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료를 1차, 2차에 나눠 주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 되더라도 1차 출연료, 그러니까 연습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발주자의 사유로 공연 일정이 초과하면 공연자가 초과 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 예술인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⁹

사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근거로 조례에서는 사실상 복사 붙이기처럼 최소한의 것을 담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나마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아 광주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다시한번 환기해본다.

4.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제도화의 출발 - 조례 제/개정 및 민관 TF 구성을 제안하며

앞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및 그것에 근거한 사회 복지제도로의 편입이 요원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예술인들은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고용 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보험 가입 권유 등이 명시되어 있고, 모든 민간단체에서도 수행해야하는 것이지만, 광주시립극단과 같이 시립 단체에서마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술인 권리 및 지위 보장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체감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 다치고, 사망한 이후에 이것의 중요성을 알게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역시 현재 가장 기본적인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대구의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조례가 필요할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민과 관이 합동으로 광주광역시의 예술인 지위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TF를 구성하기를 제안한다. 광주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히 잘 갖춰지기를 희망한다. 광주에서 예술은 미학으로서도 사회적 목소리로서

<https://www.gbto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848>

9 대구 mbc, 2021년 4월 4일, <https://dgmbc.com/article/KuZduoI7rFKp>

도 또한 실천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빛들이 최소한 유명이 아닌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다.

지역예술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지역예술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I. 들어가는 말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맞이한 지방화 물결은 지역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설립되기 시작한 공공문화재단도 지역문화진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화 정책의 결과입니다.

행정공무원의 순환근무로 인한 업무단절을 극복하고 문화전문가에 의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대와 민간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현재는 17개 광역시도에 광역문화재단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07곳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10곳 이상 재단 설립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전남에도 순천을 비롯해 목포, 강진, 영암, 담양에 설립되어 지역축제, 문화시설 운영,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 되었던 것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세계사적 담론의 영향도 있었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문화서비스 향상이라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은 탄력적인 회계 제도와 전문가에 의한 문화예술 사업비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면에서 행정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민간의 후원을 얻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자체재원 조성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 역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단 설립의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주체인 행정의 입장에서는 자체재원 조성이라는 재정의 유연성에 주목하며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 조례에는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3.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7.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8.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하면서 새삼스럽게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수행할 사업을 살펴본 것은 다시 한 번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단의 역할을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의 성장사에서 보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향후 10년! 2030년 광주문화도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고갱이는 ‘예술인을 존중하고 예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자인 배우 장도국님은 ‘안전하고 공정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지난 한해 지역문화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광주시립극단 사태를 정리해주셨고, ‘남겨진 과제’를 숙제로 던져줬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문 말미에 정책제언에서 논의를 더 확장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사무국장님은 ‘지역 프리랜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그 대안’에서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대안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단순히 개별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하향식 복지개념의 수혜자로만 예술가들을 위치시킨다면 현장 예술인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제언은 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의 경구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토론자로서 저의 역할은 선순환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층위가 있지만 오늘 포럼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의견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지원사업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역할 재조정,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준비, 법적 제도 정착과 예술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토론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두 분의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II.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

1. 광주시 지원사업

- 올해 광주시 문화예술분야 총 지원액은 89억 9천만원에 189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68건 401백만원(평균 5.9백만원)
 - (일반) 민간경상·행사보조금 / 41건 5,851백만원(평균 142백만원)
 - (통합공모) 민간경상보조금 / 80건 2,740백만원(평균 34백만원)

<(통합공모)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세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분 야	장 르	신 청		선 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지원액(%)	
합 계	10장르	122	7,320	80(66%)	2,740(37%)	
시각예술	소 계	28	906	20(71%)	490(54%)	5·18콘텐츠 (3건)
	서 예	4	199	2(50%)	70(35%)	
	사 진	6	231	4(66%)	70(30%)	
	장애인문화	2	79	2(100%)	35(44%)	
	미 술	16	703	12(75%)	315(45%)	
공연예술	소 계	83	6,108	50(60%)	2,000(38%)	5·18콘텐츠 (8건)
	무 용	3	224	3(100%)	60(27%)	
	국 악	12	727	8(66%)	150(21%)	
	연 극	15	1,138	6(40%)	250(22%)	
	대중/다원	28	2,387	18(64%)	1,100(46%)	
	클래식	25	1,632	15(60%)	440(27%)	
문 학	문 학	11	382	10(91%)	250(65%)	

○ 전년도 비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공모장르	신 청	신청금액	선 정	선정금액	신규사업	장애인/ 여성	5·18 콘텐츠
'21년	10	122	7,320	80	2,740	28 (35%)	3/2	11
'20년	13	117	8,360	76	3,130	37 (49%)	6/2	8

2.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1) 창작지원사업

- 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은 동아리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지원액은 3,280백만원에 326건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1,514백만원, 166건)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활동지원(396백만원, 6건)
 - 예술동호회(공공·민간시설 연계) 활동지원(240백만원, 10건)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440백만원, 135건)
 - 야외공연 창작지원(160백만원, 8건)
 - 지역장애인 문화예술 지원(250백만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세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분야
소 계			1,514백만원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국내·외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연계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창작공간을 보유한 전문예술단체(상업 갤러리 제외)	210백만원 (6건)
문화예술교류지원		○ 국내·외 공인된 기관(단체)과 상호방문교류를 통한 교류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70백만원 (5건)
지역특화 문화거점지원		○ 새로운 지역거점 발굴을 통한 주민밀착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환경과 연계된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150백만원 (5건)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전문예술 단체	○ 전문예술단체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911백만원 (105건)
	기초예술 단체	○ 지역 신규예술단체의 발전 가능성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설립 3년 미만의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인	○ 중장년 이상의 역량 있는 개인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만40세 이상 전문예술인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과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만19~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173백만원 (45)
	생애첫지원	○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과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예술인 지원 ○ 지원대상 : 만19~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총 지원액은 1,956백만원에 56건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1,513백만원, 45건)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30백만원, 4건)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사업(213백만원, 7건)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세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분야
소 계			1,513백만원
지역 문화 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	광주문화예술 교육지원 센터운영	○ 인력관리 : 무기직(2명),기간제근로자(3명) 운영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사업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 교육 평가 및 만족도 용역사업 등	409백만원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 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확장 및 협력사업-연3회실시예정 ○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 통합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 날라리, 어린이목수축제, 포럼 실시예정(9~10월중)	117백만원
	문화예술 교육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사업	○ 12기 통신원 및 허브사이트 운영 : 통신원(6명) 선정 및 지역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정보 및 행사 취재, 월간 뉴스레터(울림) 발행, 통합결과자료집(모음) 발간 ○ 지역문화예술교육 개인·단체 대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모임 '서로배움' 실시예정(8월중)	52백만원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및 자체기획사업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광주Re : 일반 시민대상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14개 단체 지원 ○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주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9개 단체 지원(인큐베이팅 4개 단체 포함) ○ 창의예술학교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개 단체 운영,지원 ○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 : 50-60대 여성대상 경자씨와 재봉틀 기획공모사업 3개 단체 지원, 청장년인생 설계학교, 지영씨의 인생부록II - 실행계획 수립중 ○ 거점예술배움터 : 4개구별 문화예술교육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4개 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935백만원 (45개 단체지원)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비 : 363,650천원 / 205,000천원
- 사업목적 :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디지털)분야 일자리 조성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함
- 사업내용
 - 문화예술(디지털)분야 활동을 희망하는 광주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역 문화예술 단체 청년인력 배치 및 인건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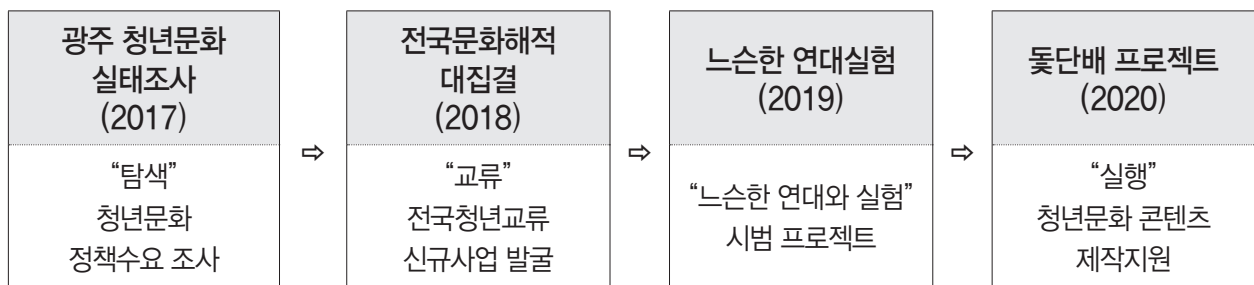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지원의 근거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2020.1.1.)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내역



연도	추진사항
2017	- 청년문화실태조사 완료 (광주청년 1,000명 설문조사 정책수요 파악,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한 수요 및 정책이슈 도출)
2018	- 청년일자리 시범사업 추진(5개 문화예술단체 청년인력 일 경험 제공)
2019	-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사업(청년인력 현장배치 20명)으로 확대
2020	- 2021 청년디지털(온라인)문화일자리지원사업(신규) 발굴 및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간담회 추진
2021	- 청년문화일자리지원사업, 청년디지털(비대면·온라인)문화일자리지원사업 운영 중

○ 청년문화일자리 사업 현재 추진사항

- 20개 단체, 17인 근무 중 ('21. 7월 기준) 7월 중 3인 채용 예정
-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 10개 단체/ 9인 근무 중
-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 지원사업 : 10개 단체/ 8인 근무 중
- 주요 지원내용

구분	주요 추진사항
인건비 지원	- 청년인력 인건비 지원 (문화일자리 80%, 디지털일자리 90%)
교육 지원	- 직무교육 수요 조사 후 온라인 전문 위탁교육 진행
	- 노무문제 예방 및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한 노무교육 진행
간담회	- 사업운영방향 제언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교류 행사	- 문화예술 현장 탐방 및 청년인력간 교류행사 진행
기타	- 노무 상담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주요성과

- 지원기간 종료 인원 16인 중 10인이 해당 단체에 정규직으로 전환
- 코로나19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에서의 위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며, 본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방문 및 정책간담회 진행. 참여 청년들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방문, 실제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원회에 전달, 향후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함

○ 현안사항

-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는 확대되어야 하며, 지속지원이 필요

III. 정책 제언

1.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보조금 지원정책 역할 분담

● 지원 현황

- 2021년 광주광역시와 문화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은 총 515건에 122억 7천만원 지원 (시 189건 89억 9천, 문화재단 326건 32억 8천)
-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68건 401백만원, 민간경상·행사보조금 41건 5,851백만원, 통합공모 민간경상보조금 80건 2,740백만원
- 특히 광주광역시 통합공모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은 시각예술(서예, 사진, 장애인문화, 미술), 공연예술(무용, 국악, 연극, 대중/다원, 클래식)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으나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과 사업 내용 중복
- 유사한 사업에 대해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사업의 변별력이 없으며, 선정 이후 모니터링, 평가 등의 환류체계 미비
- 향후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재설계(문화재단 창작지원 사업과 통합관리 필요)

● 지원 방향

○ 광주광역시

- 법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
 - 광주문화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임방울국악진흥회 등
- 법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
 - 장애인문화예술활동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사업, 생활문화예술활성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 민선 7기 공약 및 시정방향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등
-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
 -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국제평화연극제 등
- 국비매칭 행사성 사업
 - 대인예술시장, 예술의거리, 광주아트페어 등
- 예총, 민예총 등 전국적인 협회의 지속사업 및 운영비 지원
 - 광주아트페스티벌, 광주민족예술제 등
- 기타 시정방향에 부합한 행사성 사업
 - 5월창작가요제, 아트피크닉,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 광주문화재단

- 법과 조례에 의한 위탁사업 및 공기관 대행사업
-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통합공모 민간경상보조금사업 중 문화재단 사업과 영역이 중복된 사업

2.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광주예술인실태조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6. ~ 2021. 12.
- 추진대상 : 광주에서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술인 5,000명 내외
 - ※ 2018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기준으로 광주예술인 5,222명 추정
 - ※ 광주지역 예술인 현황
 - 예술활동증명(2021. 5. 현재 기준) : 2,293명

미술	음악	문학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사진	연예	만화	복수	계
630	536	344	206	148	101	77	58	58	38	97	2,293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록현황 : 개인 2,383명, 단체 1,637개소

구분	시각	음악	문학	전통	연극	무용	다원	문화	기타	계
개인	144	84	283	23	22	39	62	28	1,698	2,383
단체	164	248	108	147	80	68	170	106	546	1,637

○ 추진방법

- (1단계) 연구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자문위원회(총 7명 내외) / 1~2회 운영(6월)
- 내용 : 조사 방향, 조사범위와 방법, 조사내용에 관련된 전반적 자문, 조사항목 개발을 위한 세부분야 자문위원회 운영 가능
- (2단계) 연구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6~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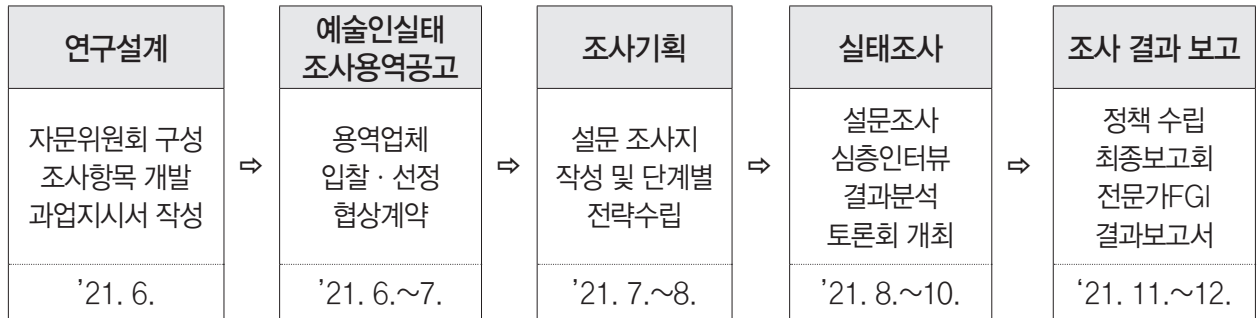
○ 과업범위(안)

- ① 조사기획 : 전문가 / 예술인 · 예술단체 대상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 설문 항목개발 및 단계별 조사표 작성 등

- ② 실태조사 수행 : 설문조사(4,000부 이상), 중간점검 및 결과분석 등의 과정에 참여 할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FGI 운영
- ③ 결과분석 및 토론회 개최,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④ 결과보고회, 결과자료집 제작

○ 추진절차

예술인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광주시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시민의 문화생활 현황과 참여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시민들의 문화향유 특성을 파악하고, 각 그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2022년 광주문화지표 개선 (2016년 지표개발)
 - 광주시민 문화생활 현황 및 실태조사, FGI 등 실시
 - 광주시 문화예술 정책 및 문화도시조성 계획에 반영
- 사업예산 : 100,000천원(시비100%)

○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조성기본조례(2015.12.28.) 제11조 문화지표개발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문화현장과 발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영역별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지표를 조사·측정·분석하여 문화지수를 산출한다. ③문화지표분석결과를 토대로 문화지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항 시장은 매년 문화지표 조사를 하여 그 개선 사항을 문화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광주시는 시민중심 문화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문화다양성, 청년, 생활문화 등 각 해당 조례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를 필요 소요 연수에 맞춰 실시
- 광주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시 중장기 문화정책, 광주문화재단 연간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사업 추진

※ 광주문화재단 조사·연구사업 현황 : 2016년 광주문화지표개발사업, 2017년 청년문화실태조사(1천5백, 시비), 2018년 생활문화실태조사(5천, 시비), 2018년 예술인복지실태조사(2천1백),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창작공간실태조사 : 2백50만(조사원보상금), 광주창작공간실무자FGI회의 : 4백70만(보상금), 2021년 광주예술인실태조사(1억, 시비)

● 광주시 문예연감

○ 광주문화재단 백서

- 2011 ~ 2020년 백서 제작. 전년도 백서 매년 4월 제작 및 배포
- 2021년 재단 창립 10주년 백서 제작 예정

○ 광주시 문예연감

- 광주시청 및 사업소, 5개 자치구,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재단을 포괄하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형태의 문화예술연감 제작을 통해 광주문화예술의 총량 축적

3. 법적 제도 정착 및 예술인 서비스 강화

● 보조금 사업 표준계약서(서면계약서) 의무화

○ 광주시 및 사업소 문화재단 표준계약서(서면계약서) 준수

- 공연예술 분야 산재보험 가입 제도 및 의무화
- 1개월 이상, 월 50만원 이상 보수일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광주문화재단 보조금 사업(창작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 공연예술 분야 산재보험 가입 제도 및 의무화
- 1개월 이상, 월 50만원 이상 소득일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월 50만원 미만, 1개월 미만 계약자 단기고용보험 가입

● 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

○ 예술인 소통 전담 창구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및 예술인 복지관련 컨설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	비고
1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신청대행	대행
2	예술인패스 발급	예술인패스 신청대행	대행
3	창작준비금 지원	지원사업 신청대행	대행
4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	직접운영
5	예술인 산재보험	복지재단 사업 안내	홍보
6	예술인 사회보험료	복지재단 사업 안내	홍보
7	생활안정자금(용자)	복지재단 사업 안내	홍보
8	의료비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대행	대행
9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 안내 및 운영	직접홍보
10	예술인 자녀돌봄	-	-
11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 준비 중	9월 예정
12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 준비 중	9월 예정
13	성폭력 신고상담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 준비 중	9월 예정
14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복지재단과 연계, 반기별 운영	연계운영

○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 구축 및 운영

- 목 적 : 예술가가 예술하기 좋은 창작환경 조성, 원스톱지원서비스 매뉴얼 구축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절차안내 체계화, 권리보장시스템 및 현장 밀착 대민서비스 제공
- 기 간 : 2021. 3. ~ 12월
- 사업규모 : 40백만원
- 주요내용 :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 지원 매뉴얼 구축, 운영, 홍보
 - (소통창구 운영) 민원접수 및 해결, 지원서비스 매뉴얼 안내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지원 법률자문단 연계 운영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지난해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제한되는 코로나관련 정책들은 공연, 문화, 예술계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문화예술인과 공연·행사관련 업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광주 문화예술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3월 문화예술 특별주간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을 발표하였고, 6월에는 이 정책에 상응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의 핵심정책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광주시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핵심비전 1, “함께” 참여하는 문화거버넌스 구축》

- ◇ 민관협치위원회 문화분과 운영
- ◇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 운영
-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운영

《핵심비전 2, “함께” 실현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지원정책 강화》

- ◇ 민간경상보조금 통합공모제도 개선 및 정산절차 간소화
- ◇ 청년 및 신진작가 예술활동 지원 및 한예종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유치
- ◇ 예술인 보듬센터 개설 운영
- ◇ 문화메세나 운동 전개 및 문화펀드 조성

《핵심비전 3, “함께” 누리는 문화향유 서비스 체계 마련》

- ◇ 양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제공 및 대형축제행사 연계
- ◇ 예술단체, 동호회, 동아리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 강좌제공
- ◇ 문화기반시설 확충
- ◇ 광주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

《핵심비전 4, “함께” 번영하는 문화 환경 조성》

- ◇ 지역 영화산업 활성화
- ◇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 활성화
- ◇ 광주정신 기반 다양한 콘텐츠의 대중화
- ◇ 예술관광 중심도시 본격 추진
- ◇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무등산 문화거리 조성
- ◇ 문화콘텐츠 거점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핵심비전 5, “함께” 포용하는 문화공동체 실현》

- ◇ 통합문화이용권 적극 홍보
- ◇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페스티벌 개최
- ◇ 문화공동체도시 구현

□ 광주시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① 광주예술인복지 실태조사 및 예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시행('22년)

장애예술인 및 예술인 1천여명 노동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책수립·시행

②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듬·소통센터” 개설 운영('21. 2.~)

(목적)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 지원

(방법)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행정, 복지, 법률, 의료, 노무, 심리 등) 운영

(내용) 광주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접수,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증명 등

(계획) 찾아가는 예술인복지서비스 톡.톡.톡. 운영, 광주예술인 실태조사 등

③ 광주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21. 8. 예정)

(목적) 광주의 모든 문화예술정보 공유, 예술인들의 소통 공간 마련

(내용) 문화예술 공연·전시 동향, 일자리 및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계획) 플랫폼 전용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

지역의 예술가들은 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형성하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 환경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인적자원입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지원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역량을 강화 하는 지름길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문화예술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정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예술인복지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예술인 지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문화의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술계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예술생태계의 안정성과 활력 유지를 위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세대별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예술인의 복지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 (시립극단 내 갑질·폭언 관련) 인권옴브즈맨 권고사항에 대해 기 조치완료 하였고, 작품별 단원제 및 작품별 예술감독제 등 시립극단 운영방식 개선 요구에 대해 각 고용형태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 검토 중

NOTE.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